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무소득 배우자 및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의  
지역가입자 편입 및 연금보험료 지원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30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무소득 배우자 및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의 지역가입자<br>편입 .....      | 3  |
| 가. 개정안의 내용 .....                                        | 3  |
| 나. 검토의견 .....                                           | 7  |
| 다. 관계 기관 의견 .....                                       | 16 |
| 2. 18세가 된 가입자에 대한 3개월간의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br>가입기간 추가 산입 ..... | 17 |
| 가. 개정안의 내용 .....                                        | 17 |
| 나. 검토의견 .....                                           | 20 |
| 다. 관계 기관 의견 .....                                       | 24 |



## I. 개요

###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630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7. 22.
- (3) 회 부 일 : 2025. 7. 23.

####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무소득배우자이거나 27세 이전까지 학업·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무소득자를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나누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치이며, 해당 적용제외 제도로 인하여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최초 가입 연령이 된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안 제3조제1항제19호나목 및 제9조제1호·제3호 삭제,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5호 삭제).
- 2) 18세가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8호 신설).
- 3) 소득이 없는 18세인 사람에 대하여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안 제100조의제5항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 4)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안 제100조의제5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무소득 배우자 및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의 지역가입자 편입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이하 “무소득 배우자”라 한다)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으면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이하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라 한다)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호 및 제3호 삭제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18. (생략)<br>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 | 제3조(정의 등) ① -----<br>-----.<br>1. ~ 18. (현행과 같음)<br>19. -----<br>-----<br>-----<br>-----<br>-----<br>-----<br>-----<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p>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 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u>나목과 다목</u>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p> <p>가. (생략)</p> <p><u>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u></p> <p>다.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u></p> <p><u>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u></p> <p><u>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u></p> <p><u>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u></p> <p>2. (생략)</p> <p><u>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u></p> <p>4. 5. (생략)</p> | <p>-----</p> <p>-----<u>다목</u>-----</p> <p>-----</p> <p>-----</p> <p>-----.</p> <p>가.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다.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역가입자) -----</p> <p>-----</p> <p>-----</p> <p>-----.</p> <p>-----.</p> <p><u>&lt;삭 제&gt;</u></p> <p>2.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4. 5.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br>(생략)<br>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br>1. 2. (생략)<br>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br>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br>③ (생략) |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br>(현행과 같음)<br>② -----<br>-----<br>-----, <후단 삭제><br><br>1. 2. (현행과 같음)<br><삭제><br><br><삭제><br><br>③ (현행과 같음)         |
|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br>(생략)<br>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br>1. ~ 4. (생략)<br>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br>6. (생략)                                                        |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br>(현행과 같음)<br>② -----<br>-----<br>-----, -----<br>-----<br>-----,<br><br>1. ~ 4. (현행과 같음)<br><삭제><br><br>6. (현행과 같음) |
|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br>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br>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                                                                                                        |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br>-----<br>-----<br>-----<br>-----<br>-----,<br><br>1. -----                                                        |

| 현행                                                                                                      | 개정안                                                                                                                                                         |
|---------------------------------------------------------------------------------------------------------|-------------------------------------------------------------------------------------------------------------------------------------------------------------|
| <p>후에 <u>제9조제1호</u>, <u>제4호</u>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p> <p>1의2. ~ 3. (생략)</p> <p>② ~ ⑥ (생략)</p> | <p>-----<u>제9조제4호</u>-----</p> <p>-----</p> <p>-----</p> <p>1의2.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 나. 검토의견

- 종전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속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었는데,<sup>1)</sup>

1995년 1월 법률 제4909호로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서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거주자’를 지역가입자 당연적용대상으로 편입하면서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는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sup>2)</sup>

2000년 12월 법률 제6286호로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지역가입자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의 연령 기준 상한이 종전의 23세에서 27세로 상향<sup>3)</sup>되어 현재에 이른다.<sup>4)</sup>

1) 법률 제411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1989. 3. 31. 공포 1989. 3. 31. 시행>

제10조(지역가입자)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1995. 1. 5. 공포 1995. 7. 1. 시행>

제10조(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배우자와 사업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와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1. 군의 관할구역(1994년 12월 31일 현재 郡의 管轄區域을 말한다. 이하 “郡地域”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農漁民”이라 한다)로서 군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3)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00. 12. 23. 공포 2000. 12. 23. 개정>

제10조(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직원

라.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종전의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관리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무소득자’가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sup>5)</sup>

□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무소득자’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지역연금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 제외)을 가입 대상<sup>6)</sup>으로 삼고 있는 국민연금의 보편 적용을 확대하면서, 공적연금의 사각지

---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年金保險料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 5. 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우혜봉·최은아,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현황과 노후 소득보장 대책」, 『정책보고서』 2009-10, 국민연금연구원, 2009, 65-66면.

6)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

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 중 어느 공적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가입자가 약 851만명(27.6%)이고,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납부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충분한 기여이력을 축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 412만명(13.3%)으로, 공적연금의 전체 사각지대 규모는 약 1,263만명(40.9%)으로 추정됨.<sup>7)</sup>

□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무소득자’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이들이 당장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sup>8)</sup>에 해당하여 가입이력을 쌓지 못하더라도, 향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한 가입이력 보충이 가능하게 되므로 노후생활 안정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유희원·류재린·김혜진·김아람,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 『정책보고서』 2021-0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1년 12월.

8)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가입 대상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는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임의가입자<sup>9)</sup>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전체 임의가입자는 총 314,103명인 것으로 나타나 가입 대상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 중 어느 공적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가입자가 약 851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2025년 3월 말 기준) >

(단위: 명, %)

| 구 분 |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       |
|-----|-----------------|------------|-------|
|     |                 | 인 원        | 비 중   |
| 계   |                 | 314,103    | 100   |
| 성 별 | 남 성             | 58,721     | 18.7  |
|     | 여 성             | 255,382    | 81.3  |
| 연 령 | 18세 이상 30세 미만   | 25,018     | 8.0   |
|     | (18세 이상 27세 미만) | (24,557)   | (7.8) |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19,448     | 6.2   |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86,541     | 27.6  |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183,096    | 58.2  |

자료: 국민연금공단

- ☐ 특히 현행법에서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이러한 제도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부모들을 중심으로 18세가 된 자녀의 가입이력을 우선 생성한 다음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다가 추후 납부제도로써 가입이력을 보충하는 방식의 ‘연금 재테크’가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sup>10)</sup>

개정안에 따라 18세가 된 모든 사람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지 아니하거나 자녀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할 부모의 경제적 여력이 불충분한 경우라도 향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할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그 혜택을 보편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하여 가입이력을 보충하게 되면 개인의 급여 수준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례가 많아질수록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일 수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정상 가입기간이 121개월(10년 1개월)이고, 생애에 걸쳐 기준소득월액이 40만원으로 일정한 甲이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못한 119개월(9년 11개월)의 연금보험료( $40\text{만원} \times 9\% \times 119\text{개월} = 428.4\text{만원}$ )를 추후 납부할 경우 그의 총 가입기간은 240개월(20년)이 되어 매월 약 35만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10) 류영상, 「“月 9만원만 넣어도 평생 2배 탄다”...국민연금 10대 가입 급증, 무슨 일[언제까지 직장인], 『매일경제』, 2025. 7. 10.

甲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예상되는 노령 연금액(월)이 약 17.6만원이므로, 그의 노령연금 수급기간이 24개월[=428.4만원/(35만원-17.6만원)]을 초과하기만 하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이 甲에게 유리하지만,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은 낮아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

(단위: 원)

| 구분   | B값        | 연금<br>보험료 | 가입기간    |         |         |           |           |           |           |
|------|-----------|-----------|---------|---------|---------|-----------|-----------|-----------|-----------|
|      |           |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1    | 400,000   | 36,000    | 175,760 | 262,980 | 350,210 | 40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 2    | 500,000   | 45,000    | 180,790 | 270,520 | 360,250 | 449,970   | 500,000   | 500,000   | 500,000   |
| 3    | 600,000   | 54,000    | 185,830 | 278,060 | 370,280 | 462,510   | 554,740   | 600,000   | 600,000   |
| 4    | 700,000   | 63,000    | 190,870 | 285,600 | 380,320 | 475,050   | 569,780   | 664,500   | 700,000   |
| 5    | 800,000   | 72,000    | 195,910 | 293,130 | 390,360 | 487,590   | 584,810   | 682,040   | 779,270   |
| (중략) |           |           |         |         |         |           |           |           |           |
| 53   | 5,900,000 | 531,000   | 452,820 | 677,550 | 902,270 | 1,127,000 | 1,351,730 | 1,576,450 | 1,801,180 |
| 54   | 6,170,000 | 555,300   | 466,420 | 697,900 | 929,370 | 1,160,850 | 1,392,330 | 1,623,800 | 1,855,280 |
| 55   | 6,370,000 | 573,300   | 476,500 | 712,970 | 949,450 | 1,185,920 | 1,422,400 | 1,658,880 | 1,895,350 |

주 1) 2025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가입자를 전제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개별 가입자의 가입 이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B값”이란 현행법 제51조제1항제2호<sup>11)</sup>에 따라 산정된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을 의미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 11)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둘째, 개정안에 따라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무소득자가 지역가입자에 편입되는 것이 ‘평균소득월액’<sup>12)</sup>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평균소득월액은 ‘사업장·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무소득 배우자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무소득자가 ‘임의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평균소득월액 산정에 원천적으로 미반영되지만,

이들이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 후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평균소득월액 산정에 반영되므로,

현행법 제51조제1항제1호<sup>13)</sup>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하 “A값”이라 한다)이 하향될 수 있고,

2025년 8월 현재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40만원<sup>14)</sup>으

12)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13)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연도의 평균소득월액

1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400천원

로 A값(3,089,062원)의 약 13%에 불과하여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의향을 가진 지역가입자가 많을수록 A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고,<sup>15)</sup> 가입 기간 중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과세 자료 등에 따라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하면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도록 통지하여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데,<sup>16)</sup>

지역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음.<sup>17)</sup>

나. 상한액: 6,370천원

2. 적용기간: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15)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16)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1.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 취득 시의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2. 1회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

공단은 법 제122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종사 업종의 변경 등 소득의 변동 사유를 확인하였거나 과세 자료 등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그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서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통지할 수 있다.

17)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③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제2호만을 말한

□ 셋째, 안 제92조제1항제1호는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 당연적용대상에 포함(안 제9조제1호 삭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안 부칙에서는 안 제92조제1항제1호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 배우자로서 지역가입자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이 제한되는바,

이 법 시행으로 무소득 배우자가 지역가입자 당연적용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이 법 시행 전 무소득 배우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지를 논의하여 경과조치의 규정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개정안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무소득자는 이 법 시행과 함께 곧바로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은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신청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나 특례 등을 두지 아니할 경우 법 시행 초기에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의 신청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의 편의 및 행정비용 감소 등을 위하여 경과조치나 특례 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1. 종사 업종의 변경, 경영 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2.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 참고로, 18세가 된 사람이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1156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 관계 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와 무소득 청년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국민연금 자격관리는 ‘경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업주부·청년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2. 18세가 된 가입자에 대한 3개월간의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지원하거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하여 3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안 부칙 제2조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br>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br>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br>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br>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br>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br>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br>있다.<br>1. ~ 7. (생략)<br><u>&lt;신설&gt;</u> |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br>-----<br>-----<br>-----<br>-----<br>-----<br>-----<br>-----<br>1. ~ 7. (현행과 같음)<br>8. <u>제100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연<br/>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가 대통<br/>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금<br/>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br/>우</u><br>②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br><u>&lt;신설&gt;</u>                                                                                                                                                                           | <u>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br/>금보험료의 지원 등) ① 18세가 된<br/>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18세</u>                                                                                                                                                    |

| 현행 | 개정안                                                                                                                                                                                                                                                                                                                                                                                                                                                                                                                                                                                                                                                                                                           |
|----|---------------------------------------------------------------------------------------------------------------------------------------------------------------------------------------------------------------------------------------------------------------------------------------------------------------------------------------------------------------------------------------------------------------------------------------------------------------------------------------------------------------------------------------------------------------------------------------------------------------------------------------------------------------------------------------------------------------|
|    | <p><u>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 중에 본문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거나 제21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은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u></p> <p><u>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3개월에서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개월 수를 제외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u></p> <p><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u></p> <p><u>⑤ 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지역가입자의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액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생략)</p> | <p>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이 경우 산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현행 제100조의5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 적용하되,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서 18세가 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의 가입기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준을 높이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개선하여 충분한 가입이력 확보로 이들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18세가 된 날 소득이 없는 경우) 개정안은 국가가 18세가 된 날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날이 속한 달부터 3개월간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2025년 현재 4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되, 연금보험료 지원기간 중에 소득이 있게 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하여 3개월에서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을 제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주는 크레딧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경우) 개정안은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하여 3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주는 크레딧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첫째,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직접 지원하거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주는 크레딧제도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지출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8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간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직접 지원하거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인정소득액으로 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주는 크레딧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64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 안 제100조의5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전망 >

(단위: 억원, 명, 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추가재정소요 | 546     | 567     | 616     | 732     | 787     | 3,247 | 649 |
| 지원대상   | 484,688 | 450,996 | 444,178 | 479,862 | 471,289 | -     | -   |
| 지원단가   | 37,525  | 41,900  | 46,200  | 50,820  | 55,660  | -     | -   |
| 지원기간   |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둘째, 안 제91조제1항제8호는 18세 무소득자가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인데,

18세 무소득자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를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르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sup>18)</sup>

또한, 현행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sup>19)</sup>에서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의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하여진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제1항),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결정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sup>20)</sup>

국민연금공단이 과세 자료 등이 없는 18세 무소득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 제91조제1항제8호가 18세 무소득자의 행정편의 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직권으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법률에 18세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직권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8)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19)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20)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셋째, 안 제100조의5제1항 단서는 18세가 된 날에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가 국가로부터 3개월간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개월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개월 수를 제한 나머지 기간만큼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주는 크레딧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현행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는 18세가 되는 날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안 제9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sup>21)</sup>

안 제100조의5제1항 단서 중 “제21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그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이 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득 신고’로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특정 연령에 이른 미가입자를 지역가입자에 편입하면서 국가가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내용 등으로 남인순의원(의안번호 제3554호) 및 서영석의원(의안번호 제10967호)

---

21)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 관계 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보건복지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연금보험료 지원에 따른 재정 소요와 관련하여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은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06 |